



대주주만의 잔치는 끝났다!

대우자판 소액주주 운동

정종승

대우그룹노동조합협의회 정책국장

대우재벌의 지킬 수 없는 허황한 약속

“우리 모두가 주인이 될 대우자동차판 매주식회사는 주주에게 매년 10%의 배당을 보장하며, 5년 후 공개되어 상장되면 주주들의 재산형성에도 큰 봇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91년 한해가 저물어갈 무렵, 대우그룹은 「대우가족」신문을 통해 10만 대우 노동자들에게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당당하게 했다. 심지어 “출자기회를 뛰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라고 ‘뻥’을 쳤다. 대우자판 설립은 그룹 기조실에서 추진하며, 당시 김태구 대우자동차 사장, 이재명 대우자동차 부사장, 최명걸 (주)대우 부회장, 서형석 기조실 사장, 김용섭 대우국민차 상무 등 7인이 발기인이 된다고 했다. 이를 굳게 믿은 3만여명의 대우노동자들이 주식을 청약했다. 거의 1천억원에 가까웠다.

그룹은 약속을 지켰다. 93년 단 한번만. 그러나 이듬해부터 약속을 뒤집기 시작했

다. 그들은 94년 주주총회에서 “93년 94년 95년 3년간 이익금을 적립해 96년도에 상장하면 30%를 한꺼번에 배당하겠다”고 했다. 그래도 이렇게나마 약속했으니 기다리면 결과가 있을 줄 알았다. 96년이 되자, 그룹은 결국 버릇대로 약속을 뒤집어 버렸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 ‘뻥’은 ‘뻥’이었다. 그 배당 결의를 지킬 수 없고 2년 뒤 98년도에 보자는 것이었다. 완전히 ‘자기 직원들 돈을 빼먹자’는 식이었다.

배당약속 불이행에 조합원들 분노

“이것이 기업인들의 정신인가? 어떻게 자기 직원 등을 칠 수 있는가? 이들의 부도덕성과 집단사기행위에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 조합원들의 여론이었다. 대우그룹노동조합협의회(이하 대노협)는 96년 3월 29일 열리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단 5일만에 220만주(발행주식 총수의 11%)에 달하는 주총 위임장을 받았고, 150명의 조합원과 간부들이 주주총회장

으로 몰려갔다. 이러한 움직임에 당황한 그룹측은 협상에 응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룹은 “98년도에 배당을 하겠다. 다만 설립 당시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 없고 98년 주총 시점의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신 무이자 대출이나 받아가라고 했다.

5년 동안 속고 또 속은 대우노동자들은 지난 3월 28일 열린 (주)대우자판 주주총회를 앞두고 또다시 뭉쳤다. 주주총회 하는 날, 모든 주주들은 회사에 의결권을 위임하지 않고 휴가를 내고 직접 주총장으로 가서 ‘반란’을 일으키기로 했다. 제일은행, 서울은행, 삼성전자, SK텔레콤 주총 등 여러 곳에서 소액주주들의 전진한 투쟁이 활발한 상황에서 고무된 분위기였다. 대노협은 결국 주식배당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대우그룹 노동자들은 대우그룹이 기업경영을 똑바로 하도록 ‘작은 손들이 모여 큰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재벌개혁투쟁으로 발전시켜야

대노협의 (주)대우자판 소액주주 운동은 무엇보다도 노동조합 조직이 주도하고 주체적으로 나서서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고, 나아가 경영참가·재벌개혁투쟁의 발판을 마련해 가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고 보기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대우재벌 계열사 중 소액주주운동이 가능한 곳을 찾아 노동조합 조직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전문가 단체의 협조를 얻어 조직적이고 치밀한 준비를 통해 일회

성 사업에서 재벌개혁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대노협은 이러한 방침아래 98년 단체교섭 시기에 맞추어 소속 노조의 토론과 결의 속에서 ‘대우재벌 경영개혁요구서’를 만들고 이를 김우중 회장에게 전달한 후 ‘대우그룹 중앙노사협의회’를 열어 대대적인 그룹 경영개혁을 촉구할 것이다. 이같아 대노협은 소액주주 권리 행사와 단체교섭·단체행동을 결합해 대우그룹의 경영투명성 제고, 책임경영 실현,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이다.

우리사주조합의 활성화

참여연대가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을 상대로 소액주주운동을 벌여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다. 상장기업에는 대부분 우리사주조합이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나서면 소액주주운동은 크게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종업원 지주제를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해해 상법과 증권거래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고,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장, 이사, 감사, 대의원을 회사 간부들에게 맡겨 놓고 있다. 물론 우리사주조합이 갖는 한계는 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의 재력이 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기왕에 우리사주조합이 구성되어 있다면, 이를 방지할 것이 아니라 소액주주운동의 발판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사주조합의 민주화는 중요한 노동조합의 사업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가) 조합운영의 민주화

우리사주조합의 비민주성은 조합장 선출 방식으로 압축되어 왔다. 그간 회사의 담당 관리자가 당연직으로 맡아 왔는 데 이를 직선제로 개선하고 조합 이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가할 필요가 있다.

나) 우리사주조합 역할 강화

주주로서 권한 행사 문제이다. 조합원 개개인의 의결권 행사(실제로는 의결권 행사 포기로 귀결)보다는 우리사주조합으로 의결권을 위임하여 실질적인 행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다)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통제권 확보

우리사주조합은 대부분 대의원총회를 최

고의 결기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대의원 선거에서 우리사주조합의 다수파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사주조합 규약을 개정하여 조합장, 이사, 감사 등을 노동조합에 서 미는 사람들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라) 노동조합을 통한 조직화

우리사주조합의 민주화가 실질적인 경영참가의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조직을 통한 우리사주 조직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연속성을 보장하고 구성원간의 이해관계에 대한 대립과 갈등을 최소화하며 주주의 역할도 보다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조합원으로부터 안정적인 위임장을 확보해 두고 의결권 행사 등 주총 참가 방침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는 조직적인 구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 ♦

강화된 소액주주 권리

소액주주 권리	상법 (주식회사)	증권거래법 (상장기업)	바뀐 증권거래법 (4월 부터)
주주 대표소송권			주식 0.05% 이상 보유
경영진 해임청구권		6월 이상 1% 이상의 주식 보유 (자본금 1천억원 이상은 0.5%)	6월 이상 0.5% 이상의 주식 보유 (자본금 1천억원 이상은 0.25%)
불법행위 중지청구권			주식 0.05% 이상 보유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6월 이상 3% 이상의 주식 보유 (자본금 1천억원 이상은 1.5%)
회계장부 · 서류 열람 복사권	권리행사 시점에 주식 5% 이상	6월 이상 3% 이상의 주식 보유 (자본금 1천억원 이상은 1.5%)	6월 이상 1% 이상의 주식 보유 (자본금 1천억원 이상은 0.5%)
법원에 회사의 업무 · 재산상태 조사를 위한 검사인 선임청구권			6월 이상 3% 이상의 주식 보유 (자본금 1천억원 이상은 1.5%)
주주총회 인건 제안권	없음	6월 이상 의결권 있는 주식의 1% 이상 보유 (자본금 1천억원 이상은 0.5%)	